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압가스시설의 시공 자격 제한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3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고압가스시설의 시공 자격 제한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등 ...	2
2.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11
3. 의무 위반 시공자에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13
※ 참고자료	16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업무내용	16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기준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6.
3. 회부연월일 : 2025.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사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사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사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고압가스시설의 시공 자격 제한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등

개정안은 고압가스시설의 시공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시공 의무,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제출 의무 및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5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① 고압가스 제조시설 안에서 고압가스설비(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저장·판매시설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자가 그 고압가스시설을 시공·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는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

현행	개정안
	<u>한 자</u>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② 시공자가 고압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4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고압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시공기록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사업자등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사업자들은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고

현행	개정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사업자등, <u>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자</u>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u>압가스시설 시공 및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1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시설의 시공자 및 특정고압가스-----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가스시설의 시공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¹⁾의 등록을 한 자로 제한하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시공·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

1)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는 건설업의 업종구분이 변경되었음.
예) 기존(가스시설시공업) → 현행(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공사를 시공·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시설의 시공·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 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반면, 현행법에는 고압가스시설의 시공 자격 및 시공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가스시설공사의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시설공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고압가스 시설 현황]

(2024.12. 기준)

구분	제조	저장	독성가스		판매*	사용	합계
			제조	저장			
시설 수	22,186	6,148	13	395	2,206	4,766	35,714

*고압가스와 LPG 모두 취급하는 판매소 포함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통계

이에 개정안은 고압가스시설의 시공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한하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시공 의무,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제출 의무 및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고압가스시설의 시공을 가스시설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을 갖춘 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먼저, 안 제13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²⁾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가스시설공사(제1종)]의 등록기준으로 가스시설공사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실무경력³⁾, 시설·장비⁴⁾, 자본금 등을 갖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⁵⁾, 고압가스시설의 시공자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압가스시설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13조의3제1항 본문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대상을 “제조시설 안에서의 고압가스설비, 저장·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압가스시설에는 제조시설 및 수입시설도 포함되므로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3조의3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는 시공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대해서 별도의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고

3)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가스 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등

4)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등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데 업무내용에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은 각각 참고자료 1, 2 참조

압가스시설의 시공을 전문자격이 없는 업종에서 시공하게 될 경우 안전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음, 안 제13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고압가스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시공자가 고압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다음, 안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하여, 시공기록·완공도면(이하 “시공기록등”)의 작성·보존·제출은 시공업자가 시설기준과

6)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가스 관련 법률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시설의 시공·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담보하고, 해당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며,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제1항은 고압가스시설의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고압가스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이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도시가스사업법」⁷⁾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⁸⁾은 가스시설의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7)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기록등의 작성·보존 업무를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1항제1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시공기록등의 작성·보존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안 제13조의3제3항은 고압가스시설의 시공자가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의3제4항은 고압가스시설의 시공자가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사업자등⁹⁾ 및 시

9) 현행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제5조에 따라 용기·냉동기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공기록등 사본의 접수 업무를 고압가스시설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6조제1항제1호의2는 “시공기록등의 작성·보존”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공기록등의 “작성·보존”은 시공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인 “시공기록등 사본의 접수”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1. (생략) <u><신설></u> 2. ~ 10. (생략) ② (생략)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시공기록등의 작성·보존</u> 2.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시공기록등 사본의 접수</u> 2.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제5조의3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을 한 자 및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 등록을 한 자

3. 의무 위반 시공자에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①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②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시공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③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위반한 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38조, 제41조제1호의2 및 제43조제4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① <u>고압가스시설</u> 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① <u>고압가스 관련 시설</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시공자</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④ -----

현행	개정안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3. (생략) ⑤ (생략)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u> <u>시공기록등을 작성·보존하지 아</u> <u>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u> <u>1의3. 제13조의제4항을 위반하여 시</u> <u>공기록등의 사본을 사업자등 및</u>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u> <u>하지 아니한 시공자</u> 2.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고압가스시설은 고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므로 고압가스 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아니하게 시공한 시공자나 시공 기록등의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제38조제1항은 “고압가스시설”을 “고압가스 관련 시설”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은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내의 모든 설비(고압가스의 취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압가스시설”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4

※ 참고자료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업무내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내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 설치공사·경상정비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수열·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의 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

		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 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 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 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저온 설비공 사, 집진기공사, 자동크린 넷설치공사, 염수분사·자 동살수장치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 사 등
2)가스시설공사 (제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 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기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건설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생략)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가스시설공사 (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		

	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 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 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 한 실무경력이 5년 이 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 사가 실시하는 가스시 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을 이수한 사람	기록계 (라) 가스누출 검지기 (마) 공기호흡 기 또는 공 기를 내보 내는 마스 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천 MΩ까지 측 정할 수 있 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 정기[아들 자캘리퍼스 (아들자 calipers: 아 들자가 달 려 두께나 지름을 재 는 기구를 말한다)· 내외경마이 크로미터 (내외경미 세측정기) ·초음파측 정기·다이	
--	---	---	--

			열 계 이 지 (톱 니 바 퀴 식 측 정 기) · 도막측정 기 등] (아) 각종 압력 계 (자) 표준이 되 는 온도계		
--	--	--	--	--	--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